

문서규정 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 제16조(채용 공정성 관리)제8항 반영

2. 주요 개정 내용

- 공사 문서규정 제43조(보존기간)의 기록물분류기준표(별표6)에서 정하는 채용 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“영구”로 변경

<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 내역 >

처리과	대기능	중기능	소기능	단위업무	기록물철	보존기간	
						변경 전	변경 후
인사처	주택도시보증	인사관리	인사	채용	신원조사	5	영구
					정규인력채용	30	영구
					임시인력채용	10	영구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1년 4월 30일까지(도착 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지원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지원처 김현영 선임주임
- 담당자(이메일) : hyunyoung.kim@khug.or.kr
- 전화번호 : 051-955-5365
- 팩스번호 : 051-955-5405